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1135
----------	------

2023. 09. 05.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14.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회부일자: 2023. 8. 21.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2023. 9. 5.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1. 제안이유

- 기록물 영구보존과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 지속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안 제17조)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개정안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검토의견

- 서울기록원은 서울시·자치구·교육청 등 64개 관할기관의 기록관리 체계를 총괄하는 정책기관이자 행정기록물을 인수·보존하고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2019년 5월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서울기록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기록물관리조례’) 제3장제12조1)부터 제17조2)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

1) 제12조(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31]

2)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9.12.31]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됨.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실적>

위원회 기능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 구성	10명 이내 <당연직 2명(서울기록원장, 기록관장)>
위원 자격	기록물관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종사자 등
위원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위원회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운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1.23. 1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서울기록원 주요 업무보고 및 자문 ▶ 2022.11.11. 2차 위원회 개최(제2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심의 ▶ 2023.6.28. 3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록원 3개년(2024~2026)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 서울 민간기록활동 활성화 방안 자문 - 서울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 및 운영규정(안) 자문

○ 서울기록관리위원회가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관 운영이 위축된 시기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초기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되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안정된 2023년부터는 「서울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을 제정³⁾(검토보고서 붙임1 참고)하여 ‘기록관리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규정하는 등 민간기록물의 수정·보존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기능 활성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됨.

3) 기록정책과-984(2023.7.13.), “서울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제정

- 참고로, 서울기록원에서는 현재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한 ‘기록물평가심의회’와 ‘기록물공개심의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기록관리위원회’는 서울기록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서울기록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등 타 위원회와는 차별화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하천 및 토지이동결의서 관련 기록물 842권에 대한 보존 가치’를 평가 한 바 있음. ‘기록물공개심의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보관된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0년 경과 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였고, ‘소장기록물의 세부 공개기준’을 심의 한 바 있음.

구분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설치 주체	서울시장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서울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서울기록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기간만료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평가 -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등 심의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심의 - 소장 기록물 세부 공개기준 심의 -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신청에 대한 심의 등
구성	10명(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7명(임명직 2명, 위촉직 5명)	7명(임명직 3명, 위촉직 4명)

역할	심의·자문	심의·의결	심의·의결
처리 안건	▶ 서울기록원 3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민간기록활동 활성화 방안, 서울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에 대한 규정(안) 등	▶ 하천 및 토지이동결의서 관련 기록물 842권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	▶ 30년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여부 심의 ▶ 소장기록물 세부 공개기준 심의
설치 시기	2020.10.14	2020.10.30	2020.11.01

■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관련규정⁴⁾에 따라 추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기록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존속 기한 연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실적(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은 상당 부분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음.
- 참고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23년 7월 24일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검토를 받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아야 하나,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6월 8일에 기록물관리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⁵⁾하였고, 그 이후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가 2023년도 6월에서 7월 사이에 추진되어, 존속기한 연장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5) 기록정책과-794(2023.6.8.),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 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 <u>2027년 12월 안31</u> <u>일</u> -----